(성명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연장제도와 벌금제도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대책협의회는 18일 노동부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사실을 적극 환영한다. 이러한 노동부의 방침은 지난 14일 우리가 요구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장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정책결정이라 평가한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단지 노동부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관련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동부는 외국인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의 방침을 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가능한한 빨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실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산재보상법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각각의 사안을 처리해야 하며, 일차적으로 현재 경실련에서 농성 중인 14명의 외국인 노동자부터 적용해 나가야 한다.

둘째, 노동부의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연장제도 및 벌금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는 차제에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 무수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체류연장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는 가중한 벌금제도를 크게 개선해야 한다.

셋째, 노동부는 기왕에 이러한 방침을 정하였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파악과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해결하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하루속히 노동부의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실시되기를 촉구한다.

1994.1.19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대책협의회
(전화: 741-7961~5)